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졸업증서 수여 규정

제정 2012. 3. 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전신학교 포함)의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수여대상) 명예졸업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.
  - 1.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재적기간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민주발전에 공헌하다가 부득이 정해진 과정을 이수 하지 못한 사람
  - 2. 전신학교(2년제 전문대학과정에 한함) 졸업자로서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크게 빛낸 사람
  - 3. 본교 입학 후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크게 빛낸 사람
  - 4. 그 밖에 명예졸업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
- 제3조(수여대상자의 결정) 명예졸업증서 수여대상자는 총동창회장이나 관련 대학장의 추천에 따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정한다.
- 제4조(증서의 서식) 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상자 중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증서를,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

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를 수여하며, 내용 및 문안 등은 변경할 수 있다. 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제14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명졸 제 호

## 명 예 졸 업 증 서

○ ○ ○ (한자병기)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교 과에 년 월에 입학하여 재학 중 \_\_\_\_\_\_ 사유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지 못하였으나 \_\_\_\_\_ 한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○ ○ (인)

명졸 제 호

## 명예졸업증서

○ ○ ○ (한자병기)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\_\_\_\_\_ 등 본 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○ ○ (인)